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용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27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6.

발 의 자 : 전용기 · 조계원 · 박용갑
서미화 · 김기표 · 송옥주
박홍배 · 윤준병 · 박홍근
한민수 · 김남희 · 정준호
박해철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일부 정치 브로커와 결탁한 여론조사 기관이 난립하여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, 여론조사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.

현행 제도는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 및 조사 방식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, 일부 기관이 편법으로 규제를 우회하는 등 신뢰도 확보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 특히, 최근 문제가 된 미등록 업체의 불법적인 여론조사는 사후 조치 외에 마땅한 대책이 없어 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음.

이에 여론조사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객관적인 등급제를 도입하여, 유권자가 직접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(안 제8조의10 신설).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10(여론조사 기관·단체의 등급 등) 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의 품질을 효율적으로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.

②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여 등급을 정할 수 있다.

③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조사시스템, 분석전문인력, 운영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④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.

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연구·검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⑥ 선거여론조사기관 등급의 구분, 등급결정의 유효기간, 등급결정에 관한 조사의뢰, 등급결정 결과 공표, 등급결정 권한의 위탁 등에

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8조의10(여론조사 기관·단체의 등급 등) 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의 품질을 효율적으로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.</u> <u>②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여 등급을 정할 수 있다.</u> <u>③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조사시스템, 분석전문인력, 운영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</u> <u>④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.</u> <u>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</u>

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
연구·검사기관 등에 위탁할
수 있다.

⑥ 선거여론조사기관 등급의
구분, 등급결정의 유효기간, 등
급결정에 관한 조사의뢰, 등급
결정 결과 공표, 등급결정 권
한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
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
정한다.